

<서 면 답 변 목 록>

□ 합 계 ——— 16건

<이재원 위원 — 4건>

- 민원1회방문처리제 접수, 처리현황 (민원)
- 수원, 성남 등 직할시 승격 문제에 대한 견해 (지방)
- 시·군에서의 도의원 예우 문제 개선방안 (총무)
- 내무부 및 타도 출신 공무원 전입현황 (총무)

<정순희 위원 — 1건>

- 도 시·군 여성공무원 직급별현황과 승진문제 등 인사대책 (지방)

<원기영 위원 — 9건>

- '94내무국 예산불용액 내역과 '95예산 증액내역, 현잔액 257억원의 향후 집행계획과 예상 불용액 (총무)
- '96년도에 더 추진할 공직자 사기진작책 (총무)
- 연고지 배치 대상자 및 연고지 배치 추진용의 (지방)
- 현재 인사의 공정한 수준과 향후대책 (총무)
- 시·군 농업직 전직 가능여부와 사기진작책 (지방)
- 시·군 조직개편에 있어 도의회와 협의여부 (지방)
- 현재 운용되고 있는 규칙 및 지침 현황 (법무)
- 도 및 시·군의 정원을 줄이고 읍·면·동 정원을 늘릴 용의 (지방)
- 수도권 행정협의회 협의사항 및 미협의사항 등 (기획)

<박주을 위원 — 1건>

- 경마장 본장의 마권세 수입증대 및 타시·도 장외발매소분 안분배율 낮출 수 있는 방안 (세정)

<고수복 위원 — 1건>

- 수산과 보유선박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사유 (수산과) - 기제출

<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서>

○ 이재원 위원('95. 11. 21. 내무국 행정사무감사시)

(질의 1)

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시기와 시행후 현재까지 얼마나 처리되었으며 처리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.

(답변 1)

- 「민원1회방문처리제」의 시행시기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내무행정개혁의 핵심과제로 선정 '93년 5월 10일부터 추진하여 오다가 '94년 4월 8일부터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으로 제정·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
- 현재까지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'93년도 981건, '94년도 615건, '95년 10월말 현재 187건으로 총 1,78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.
- 주요처리내용은 금년도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77건, 배출시설설치허가 12건,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28건, 토지에관한권리취득허가 41건 등 17종 187건의 복합민원을 1회방문민원으로 지정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.

(질의 2)

수원, 성남시등 인구가 100만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광역시 설치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시 설치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.

(답변 2)

- 지방자치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,
 - 지방자치법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자치단체를 폐지·분합할 때에는 법률로 정하고,

- 지방자치단체를 폐지·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 - 광역시 설치 기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과거의 “예”를 보면 통상 인구 100만을 상회할 때 광역시(중전 직할시)설치를 하고 있습니다.
- 도내 '95. 10월말 현재 수원시(743,535명), 성남시(873,358명), 부천시(776,068명)가 인구 100만에 도달하고 있습니다만,
- 광역시 설치의 자치단체로서의 재정능력, 기존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, 관할구역 확정의 타당성, 시설치로 인한 인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, 지리적 여건, 주민편의,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 등 제반여건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.

(질의 3)

- 시·군에서 행사시 도의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
- 또한 초청된 도의원에 대한 좌석을 여·야 구분없이 모두 준비하는 곳이 있는 반면 여야 모두 준비하지 않는 시·군, 여당의원에게만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
- 지난해 도의원 예우에 관한 강조지시가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와 잘 안되고 있다면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.

(답변 3)

- 도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는 지난 제3대 임기중에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각종 행사시 시·군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이제 관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.
- 민선단체장시대 출범에 따라 시·군단위 행사는 자치단체장인 시장·군수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굳이 여·야의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
- 또한 행사의 성격·유관도 등에 따라 좌석배치는 다소 유동적이며,
- 행사 참석인사 상호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전서열 결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.

- 그러나 일부 시·군단위 행사시 도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다소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
- 도민의 대표이신 도의원님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(질의 4)

민선도지사 취임이후 충청권과 내무부 공무원이 전입한 사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.

(답변 4)

- 민선 도지사 취임이후 충청권 전입자는 없으며
- 내무부 공무원 전입자는 5명으로 3급 1, 4급 3, 5급 1명이 전입하였으나, 동시에 내무부 전출자는 4명(2급 1, 5급 3)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,
- 앞으로는 중앙부처와의 교류시에도 대동한 상호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정순희 위원('95. 11. 21. 내무국 행정사무감사시)

(질의 의)

시·군별 여성공무원 현황과 승진 특혜여부,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.

(답변)

- 도내 여성공무원은 도 443명, 시·군 6,496명 등 총 6,939명이며 전체 공무원대비 약 20.3%로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.
- 현재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우대나 특혜는 없으며 여성공무원들 입장에서만 보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
-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여성공무원이 승진이 나 보직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○ 원기영 위원('95. 11. 21. 내무국 행정사무감사시)

(질의 1)

- '94년도 불용액 내역과 '95년도 예산증감부분에 대해 물으셨으며,
- 또한 '95년도 집행잔액 257억원에 대한 집행예정액과 불용예정액을 물으셨습니다.

(답변 1)

- '94년도 불용액 내역은 총 11억 7,100만원으로 그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3,200만원,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500만원, 예산절감액이 500만원, 그리고 집행잔액이 11억 2,800백만원 이 되겠습니다.
- 과목별로는 내무행정이 5억 4,000만원, 시·군·구 행정운영이 9,900만원, 지방수입관리가 4,900만원, 회계 및 재산관리가 4억 8,000만원 등입니다.
- '95년도 예산 증가부분은 기타직보수 1억 3,000만원, 복리후생비 2억원, 수련원건립시설비 45억원, 선거관리비 274억원이며, 새마을사업과 건강한국토사업비 43억원, 그리고 마권세 징수수수료가 18억원 등입니다.
- 집행잔액 257억원의 향후 집행계획은 공무원수련원 건립비 43억원, 새마을사업 및 건강한국토가꾸기 사업비 108억원, 민원봉사대상 상사업비 4,000만원, 행정관리시범우수기관 상사업비 5,000만원, 시·군청사 보조금 51억 2,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
- 다음은 향후 불용예정액에 대해 예산과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불용예정액은 내무행정이 5억 5,000만원, 시·군·구 행정운영 5,000만원 지방수입관리 5,300만원, 회계 및 재산관리 1억 9,000만원 등 총 8억 4,300만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.

(질의 2)

공직자 사기진작책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'96년도에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용의와 그 시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.

(답변 2)

- 공직자의 사기진작책으로 매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'96년도 추진시책으로는,

- 우수공무원 4개팀 20명에 대해서는 해외배낭여행 기회부여 및 반기별로 연 2회 50명에 대하여 해외시찰을 실시할 예정이며,
- 격무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휴가로 휴양시설 이용권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하위직 공무원 승진기회 확대를 위하여 6급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토록 하며
- 매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수여 및 우수제안자 특별승진·기혼 여성공무원을 위한 청내 보육시설 설치·야간대학 다니는 공무원에 대해서 학자금지원 등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.

(질의 3)

연고지 배치 대상자 및 향후 연고지 배치 추진 용의는?

(답변 3)

- 연고지 배치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 (인사교류)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4(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)규정에 의거 매년 2월중 내무부지침에 의거 60세이상 부모 부양희망자, 부부공무원 합류, 연고지 및 본적지 근무희망자를 대상으로 시·도간, 시·군간 희망자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'95년도 연고지배치 희망자는 도내 시·군간 295명, 시·도간 203명이 희망하여 도내시·군간 289명, 시·도간 149명 등 총 438명을 연고지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.
- 연고지 배치는 희망기관과의 직렬 및 결원 불부합, 전출입 시·군의 부동의, 수도권 인근 도시의 전입희망자 과다로 배치에 어려움이 있으나,
- 앞으로 전입·전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여 많은 공무원이 희망연고지에 근무하여 안정된 공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.

(질의 4)

공정한 인사운영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시면서 '95년도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몇 %를 잘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.

(답변 4)

- 조직원 모두가 100% 만족하는 인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

- 그러나 모든 조직원이 공감하고 합리적인 인사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나 미흡하다고 생각되며,
- 향후에는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.

(질의 5)

도·시·군 농업직 인사적체와 관련하여 전직이 가능한지와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.

(답변 5)

-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직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,
 - 전직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에 1년 이상의 근무 또는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자와,
 - 전직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전직시키는 경우,
 - 그리고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한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 시험 등을 거쳐 실시할 수 있으며,
- 임용권자가 직렬간 인사균형, 수급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.
- 농업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는 농업직뿐 아니라 축산, 임업 등 일부 기술직의 공통적인 문제로서 복수직렬 직위에 기술직을 우선하여 임용토록하는 등의 인사운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(질의 6)

○ 시·군 조직개편에 대하여 도의회와 협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.

(답변 6)

- 「작은 정부구현」을 위하여 기구와 정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지역특성을 살리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·군의 조직개편은 구 설치대상인 고양시와 시승격 대상인 파주·이천·

용인을 제외한 27시·군이 완료되었습니다.(화성군은 개편중)

- 시·군 조직개편은 「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」제10조2항에 의거 시장·군수의 개편(안)에 대하여 도지사가 관계법령 검토후 조정하였습니다.
- 시·군의 기구는 도지사의 승인후 당해 시·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어서 도의회와 협의가 없었습니다.

(질의 7)

규칙 및 지침이 너무 많아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데, 현재 운용되고 있는 규칙 및 지침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.

(답변 7)

- '95년 10월말 현재 운용되고 있는 규칙은 도규칙 107개, 시·군규칙 2,478개이고 도지침은 27개가 있습니다.
-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외부에 효력을 미치나, 지침은 행정내부의 사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는 행정규칙으로 외부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지만,
- 현재 도에서는 자치법규 등을 일제 정비 추진중에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·규칙 등은 금년말 완료 목표로 개정 또는 폐지토록 할 계획입니다.

(질의 8)

- 행정구조는 피라밋형태가 바람직하나 현재제는 반대로 도·시·군은 비대하고, 읍·면·동등 하부조직은 빈약한데,
- 읍·면·동의 정원은 늘리고 도 및 시·군정원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.

(답변 8)

- 현재 경기도의 총정원은 35,448명으로서 도청이 14%인 5,287명, 시·군이 59%인 20,961명, 읍·면·동이 26%인 9,200명입니다.

- 읍·면·동 정원이 도 및 시·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나 시·군의 읍·면·동 정원에 대한 기관간 조정은 정원책정 범위내에서 시장·군수 권한 사항으로써,
- 하부기관으로 업무를 위임시에 이에 따른 기구·인력을 병행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.
- 참고로 인구 4만 이상의 과대동인 9개동 218명을 금년초 분동 증원한 바 있으며 현재 11개동 206명을 분동 증원신청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.

(질의 9)

- '95년도 수도권행정 협의내용 및 미협의사항과 쓰레기, 상수도 관계 협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.

(답변 9)

- 수도권 인접 시·도와 관련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현안문제를 원만히 협의 조정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,
- 지난 11월 16일 경기, 서울, 인천의 3개 시·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는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.
- 금번 회의에서는 경기도에서 상정한안전 7건과 서울시에서 상정한안전 4건 등 총 11건의 안전을 상정하여 토의하였습니다.
- 본 회의에서 토론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,
 - 금번 회의는 '95년도에 최초로 개최된 만큼 각 자치단체별 상정안전에 대한 자기측 의견을 제시하고 입장을 정리·확인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하고,
 - 수도권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기로 협의하였으며,
 - 도로·교통, 수질보전문제 등 광역행정 현안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실무대책협의체를 구성기로 협의하였고,
 - 가까운 시일내에 경기도지사, 서울시장, 인천시장이 만나 본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기로 하였습니다.
- 참고적으로 금번에 상정된안전의 유형은 도로·교통문제가 5건, 수질보전문제가 4건, 하천개수 1건, 기타 1건이었으며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는 상정된안전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.

○ 박주을 위원('95. 11. 21. 내무국 행정사무감사시)

(질 의)

- 마권세입이 본장보다 장외발매소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본장의 마권세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현행 타시·도 장외발매소분의 안분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.

(답 변)

- 마사회 본장은 관람객 2만 7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반면 현재 관람객이 과포화 상태에 있어 경마인구를 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장의마권세입이 증가되지 않고 있으며, 장외발매소는 매년 1~2개소가 증설되고 있어 장외발매소분의 마권세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하겠습니다.
- 본장 마권세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본장의 관람대를 증축하고, 본장에서 경마 축제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방안이 있다 하겠습니다.
- 한국마사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오는 2000년까지 본장 관람대를 현재보다 2배로 증축할 계획이라고 하며, 또한 경마축제행사도 매년 1~2회 증가 개최되고 있어 본장 마권세입의 증대가 기대됩니다.
- 타시·도 장외발매소분의 마권세입 안분비율은 지방세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·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, 이는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어 당장 개정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

(참 고 자 료)

- 타시·도 장외발매소 마권세입 총계('95.10월말현재) —67,495,548천원
- 자 도 분 : 53,997,548천원(80%)
 - 타 시·도 분 : 13,498,000천원(20%)
- 연차별 장외발매소 마권세입 안분내역(법제155조, 동법시행령제105조의2, 부칙제5조)
- '95년 : 본장 소재지도 80%, 장외발매소 소재지도 20%
 - '96년 : 본장 소재지도 60%, 장외발매소 소재지도 40%
 - '96년이후 : 본장 소재지도 50%, 장외발매소 소재지도 50%

○ 고수복 위원 ('95. 11. 21. 내무국 행정사무감사시)

(질 의)

○ 수산과 보유선박의 기항지, 선박과 도청 수산과의 1일 교신여부, 일반선박과 구별이 가능한지 여부, 일반인이 수시로 관람할 수 있는지 여부, 유지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, 관리인 7명 중 항해사가 4명씩 필요한 이유 등을 물으셨습니다.

(답 변)

- 수산과 보유선박 1척 80톤은 어업안전지도 및 불법어업단속을 위한 것으로,
- 선박의 기항지(정박지)는 인천항이고 선박과 1일 교신회수는 2회로 어업지도선에서 인천어업무선국을 통하여 도청과 교신하고 있습니다.
- 또한 어업지도단속을 위주로 건조된 어업지도선은 일반선박과 구별되며, 어선의 안전조업지도와 불법어업단속을 위하여 출항시외의 정박지에는 관람이 가능합니다.
- 선박유지관리비는 1억 7,0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으며, 관리인원 7명은 해기면허소지자로 항해분야 4명은 선장 1명, 항해사 1명, 선원 2명이고, 기관분야 2명은 기관장과 기관사이며, 그외 통신장 1명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필수인원이 승선하고 있습니다.